

수험자 안내문

우리 공단은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시험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째, 향후 시험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합격자 발표 :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60일간) 및 ARS 1666-0100(4일간)
- 제3차 시험 장소 일정 공고 :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둘째, 수험자의 응시편의를 위해 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시험전일 18시부터 시험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 사전 안내 메시지(알림톡) 발송 (알림서비스에 수신 동의한 수험자 대상)
 -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안내 메시지는 1일차 시험실 안내 1회 발송
 - Smart Q-finder(시험실 바로가기) 수험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확인 또는 Q-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에서 확인
-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축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험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2차 시험 채점종료 이후 채점위원이 작성한 채점평을 공개합니다.
 -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자료실

셋째, 기타 수험 관련 정보(홈페이지 등)를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기관) 합격의법학원	(정보 및 카톡상담) 동네노무사	(유튜브 채널) 동네노무사TV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2차 국가자격시험

교 시	시 간	시 험 과 목	
1교시	50분	행정쟁송법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자 유의사항 】

1. 시험문제지 표지와 시험문제지의 총면수·문제번호 일련순서·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시고,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유색필기구·2가지 이상 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됩니다.)
3.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번호 및 문제를 기재(긴 경우 요약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해당과목 득점은 조정산출된 점수만 공개하며,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5. 감독위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시험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수험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QR코드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축하 SMS(알림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행정쟁송법

[문제1] 甲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A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행정청은 A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甲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행정청은 A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이하 ‘재거부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甲은 행정청의 재거부처분이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물음)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문제2] 甲은 출근 중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한도액인 상해보험금 1,500만원, 장해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이하 “乙” 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급여 500만 원, 휴업급여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甲은 가해 차량 소유자인 甲 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甲 2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乙은 甲이 이중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6. 2. 20. 甲에게 기지급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액 중 2,000만 원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수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甲은 납부하였다.

물음) ① 유효함을 전제로, 甲이 乙을 상대로 납부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나 무효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 ③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나 인용판결을 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각 설명하시오. (30점)